# 2022년도 제2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o 일 시: 2022. 3. 16.(수요일), 10:30
-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김경숙, 박성호 위원
-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 <b>의결안건〉</b>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3. 폐회선언분과위원장

#### Ⅱ.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292건(안건번호 제2022-10665 호~11043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2-10665호~10666호(순번 1번~2번)는 □□□□ 카페에 영상저작물의 일부를 게시한 사안으로서, 특정 목적에 의해 특정 장면만을 선택하여 게시한 점, 공정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2-10667호(순번 3번)은 △△△ 카페에 영상저작물의 오프닝 영상 일부를 게시한 사안으로서, 공정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 는 점, 이러한 이용이 심의요청된 영상저작물을 대체할 가능성은 거 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2-10668호~10669호(순번 4번~5번)는 ♠♠♠ 카페에 영상저작물의 일부를 게시한 사안으로서, '몰아보기' 컨텐츠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영상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합법시장 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2-10670호(순번 6번)는 □□□□ 카페에 영상저작물의 일부를 게시한 사안으로서, 특정 목적으로 특정 장면을 선택하여 게 시한 점, 이러한 이용이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 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2-10671호~10703호, 10705호~10720호(순번 7번~39번, 41번~56번)는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2-10704호(순번 40번)는 영상저작물의 극소한 일부 이용에 불과하여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2-10721호, 10722호, 10724호~10727호(순번 57번, 58번, 60번~63번)는 음반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사안으로 보호요건 해당성, 필요성에 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인정되어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그 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안건번호 제2022-10723호, 10728호~ 11043호(순번 59번, 64번~379번) 심의안건 게시물 1,166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6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659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 (안건번호 제2022-7650호~8308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5개에 접속할 수 있는 613개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하고, 기 접속차단 조치된 사이트와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이트인 '육육육육'의 46개 URL 정보에 대해서는 부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o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20회 저작권보호심 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안건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13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1,292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6번은 민원인 (실명 1인)이 신고한 건으로, ◆◆◆ 카페의 이용자들이 일본 애니메이션 '□□□'를 일부 편집한 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게시한

사안임. 총 13개 게시물임.

(순번 1번~순번 2번 각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순번 1번~2번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서로 다른 ▼▼▼ 카페에게시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이며, 동일한 게시자가 작성하였음. 각게시물은 ♡♡♡ 캐릭터 피규어 사진과 리뷰, 캐릭터 이미지와 소개, 그리고 해당 캐릭터가 나온 편집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음. 게시물 제목에 캐릭터 피규어 리뷰임을 명시하고 있음. 영상의 경우 "◎◎◎ ◎◎ ◎◎ ◎◎ ◎◎◎◎◎◎◎◎◎"라고 하여 게시자가 직접 편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그 내용은 해당 캐릭터의 액션장면 모음임. 각 장면의 정확한 출처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영상에 의하여 저작물 전체의 줄거리를 알 수는 없음.

(순번 3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순번 3번 게시물은 ●●●, ●●● 등 일본 애니메이션의 오프닝 및 엔딩 일부를 편집한 영상으로, 영상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함과 동시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측면 또한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총 21편의오프닝 또는 엔딩곡을 12분 10초에 걸쳐 이용하고 있는데, 즉 각 영상 및 음악당 평균 34초 내외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중 첫 번째로 재생되는 영상의 경우 음원 4분 0초, 방송용 편집 음원 1분 50초 중 45초를 이용하고 있음.

(순번 4번~5번 각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순번 4번~5번 심의대상 게시물은 '▧▧▧▧▧▧▧▧▧▧▧। ▧▧'이라는 제목으로 원저작물의 일부를 편집하여 게시한 영상임. 일반적으로 '웃긴 장면모음' 등의 제목을 가진 영상은 줄거리의 연결 없이 단편적인 웃긴 장면 여러 개를 모아서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심의대상 게시물의 경우 특정 에피소드의 줄거리를 중심으로 장면을 편집·제 공하고 있어 일종의 '몰아보기'의 기능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음.

(순번 6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순번 6번은 "☆☆☆ ☆☆☆ ☆☆☆ ☆☆☆ ☆☆☆ ☆☆☆ ☆☆☆☆ ☆☆\*\*라는 제목으로 특정 캐릭터가 등장하는 장면을 15분 가량의 길이로 편집하여 게시하고 있음. 제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어 더빙 성우를 서로 비교하는 목적의 영상이며, 줄거리에 따른 배치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순번 4번 내지 5번의 경우 '몰아보기' 컨텐츠의 기능을 할수 있는 영상으로서, 단지 저작물을 공중의 감상에 제공하는 목적만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일부만을 이용한다 하여 원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 B 위원: 이러한 영상저작물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한 인정됨.
- A 위원, C 위원: 동의함.
- C 위원: 순번 1번, 2번 및 6번의 경우 특정 인물의 액션 장면 또는 연기 장면을 제공하고 있는 편집 영상으로서, 캐릭터 피규어 소개 및 성우의 연기 비교라는 특정 목적에 의해 선택된 일부만을 모아

복제·전송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 B 위원: 순번 3번의 경우 총 길이 각 24분의 영상물 중 2분 미만을 차지하는 오프닝 부분을 일부 이용한 것으로, 공정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러한 이용이 심의요청된 영상저작물을 대체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오프닝 영상의 시장이 별도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 A 위원: 순번 1번 내지 2번은 특정 목적에 의해 특정 장면만을 선택하여 게시한 점, 공정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고려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함이 타당함.

순번 3번은 □□□ 카페에 영상저작물의 오프닝 영상 일부를 게시한 사안으로서, 공정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러한 이용이 심의요청된 영상저작물을 대체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함이 타당함.

순번 4번 내지 5번은 ◈◈◈ 카페에 영상저작물의 일부를 게시한 사 안으로서, '몰아보기' 컨텐츠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영상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이 타당함.

순번 6번은 ▷▷▷ 카페에 영상저작물의 일부를 게시한 사안으로서, 특정 목적으로 특정 장면을 선택하여 게시한 점, 이러한 이용이 원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함이 타당함.

- B 위원,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2번 및 3번은 시정권고를 부결하고, 순번 4번~5번은 시정권고를 가결, 순번 6번은 시정권고를 부결함.

(순번 7번 채증 자료 및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 서)심의대상 게시물은 채증 당시 '▤▤▤▤▤ ▤▤ ▤▤▤▤'을 제공 중인 것이 확인되었으나, 현재 비공개 처리되었음.

(순번 30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게시물은 ★★★ 블로그에서 '△△△△ △△△△△△△△△△ 등 제공하고있는 사안임. 전체 분량은 총 24분 10초 정도이며, 정상적으로 재생되고 있음.

(순번 40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은 총 24분 분량의 방송 중 4분 20초를 제공하고 있음.

(순번 52번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은 웹하드에서 총 106MB 파일을 다운로드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그림파일 형태로 해당 만화 전체를 캡쳐해서 제공하고 있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

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순번 40번은 4분 20초의 적은 분량만을 제공하고 있어 합법 시장에의 대체가능성이 높지 아니하므로 시정권고 대상으로 하기에 는 부적절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 A 위원, C 위원: 동의함.
- A 위원: 순번 7번~19번의 비공개 게시물의 경우 이웃공개, 서로이웃 공개 등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을 것이 예상되고, 게시물 이 삭제·전송 중단된 경우와 달리 시정권고의 대상인 심의대상 게시 물이 계속하여 존재하고 있는 점, 언제든지 전체공개로의 전환이 예 상될 수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전체공개 게시물과 다르게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C 위원: 순번 7번~39번, 41번~56번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이며, 다만 순번 40번은 제공 분량과 합법시장에의 대체가능성을 고려하여부결함이 타당함.
- A 위원, B 위원: 이견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7번~39번, 41번~56번은 시정권

고를 가결하며, 순번 40번은 시정권고를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7번, 58번, 60번 내지 6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총 14건). 각 심의요청 저작물은 드뷔시(1862년 사망), 모차르트(1721년 사망), 베토벤(1827년 사망), 쇼팽(1810년 사망)을 저작자로 하고 있으며, 실연자는 알 수 없으나 수록 음반이 표시되어 있음.

(순번 57번, 62번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웹하드에서 480캐시에 판매중이며 '멜로디가 아름다운 클래식 모음 1266' 제목으로 게시되어 있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오진해 전문위원: 사무처가 각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한 결과, 심의 대상 게시물이 복제·전송중인 음원과 심의요청된 원저작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었음.
- A 위원: 보호요청 저작물과 심의대상 게시물에 음반제작자 및 실연자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므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함. 제작연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영화 같은 예외적인경우가 아닌 한, 단순히 음반제작자 또는 실연자 정보를 알 수 없다

고 해서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긴급한 피해 확산을 막고자 하는 시정권고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안이라고 여겨짐.

- B 위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음원을 제공중일 가능성도 있다고 여겨지.
- C 위원: 불법복제물을 심의할 때, 원저작물 권리자의 권리주장 내지 증명이 우리 심의위원회의 주요한 심의 기준은 아니었음. 시정권고 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짐.
- C 위원: 해당 게시물은 저작인접권 보호에 관한 사안으로, 보호요건 해당성 및 필요성에 관련하여 전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음.
- A 위원, B 위원: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전체위원회 심의안건으로 회부하는 것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57번, 58번, 60번~63번은 전체 위원회 심의안건으로 회부하기로 결정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59번, 순번 64번~379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1,166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 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방송 'DR.브레인 (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42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애플tv+에서 독점 제공하고 있는 국내 드라마 'DR. 브레인(2021)'을 47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전체분량을 다운로드 방식 및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방송 '소년심판(202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74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방송 '소년심판(2022)'을 394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드라마 10부작 통합본으로 제공 중임.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순번 59번, 순번64번~379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59번, 순번64번~379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 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10665호~10666호(순번 1번~2번)는 시정권고의 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2-10667호(순번 3번)는 시정권고의 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2-10668~10669호(순번 4번~5번)는 시정권고의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2-10670호(순번 6번)는 시정권고의 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2-10671호~10703호, 10705호~10720호(순번 7번~39번, 41번~56번)는 시정권고의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2-10704호(순번 40번)는 시정권고의 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2-10704호(순번 40번)는 시정권고의 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2-10721호, 10722호, 10724호~10727호(순번 57번, 58번, 60번~63번)는 시정권고의 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2-10723호, 10728호~11043호(순번 59번, 64번~379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4쪽부터 18쪽은「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7696호~8308호(순번 47번~659번)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2-7650호~7695호(순번 1번~46번)는 부결한다."

# 4. 폐회 선언

o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2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 2022년 제2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3. 22.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김경숙

위원 박성호